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45
----------	-------

발의연월일 : 2025. 7. 8.

발 의 자 : 박홍배 · 박정현 · 민병덕
이재정 · 서영교 · 박희승
황명선 · 문대림 · 박 정
김우영 · 윤준병 · 전용기
윤후덕 · 염태영 · 한준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자리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고용기반 확보가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수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발굴·지원의 구체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현재 ‘일자리 으뜸기업’ 등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근거가 「고용정책 기본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지속성과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지

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제6조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9호) 중 “제8호까지의”를 “제9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중전의 제10호) 중 “제8호까지의”를 “제10호까지의”로 한다.

9.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 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u><신 설></u>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 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 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 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 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 책) ① ----- ----- -----. 1. ~ 8. (현행과 같음) 9. <u>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u> 10. -----제9호까지의----- ----- ----- ----- 11. -----제10호까지의---- ----- ----- ----- ----- ----- ----- ----- -----

<u>11.</u> (생략) ② ~ ④ (생략)	<u>12.</u>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